

2003. 11. .
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(농 업 경 제 과 소 관)

1. 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안
2. 계룡시소비자보호조례안

전문위원 김 세 현

계룡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농지법 제46조와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소비자보호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